

[시행 2019, 2, 15.] [총리령 제1522호, 2019, 2, 15., 일부개정]

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기준과) 02-397-7303 원자력안전위원회 (생활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4 원자력안전위원회 (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7 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정책과) 02-397-7264

- **114** () 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,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.
-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"총리령"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- 1.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. 다만,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가.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
 - 나.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(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)
 - 다.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
 - 라.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
- 2.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
 - 나. 수검계획서
- ④ 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<제1522호, 2019. 2. 15.>

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